

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2020. 7.

여 성 가 족 부
(가 족 문 화 과)

법제처 심사 전

1. 개정이유

아이돌보미에 의한 아동학대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아이돌보미에 대한 자격 및 관리·감독을 강화하는 내용 등으로 「아이돌봄 지원법」이 일부개정 됨에 따라 아이돌보미 자격정지 기간을 확대하는 한편, 아이돌보미의 적성·인성 검사 실시 시기, 만족도 조사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- 가. 아이돌보미 적성·인성검사를 채용할 때에 실시하고 채용여부를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하고자 함(안 제3조제4항 신설)
- 나. 아이돌보미 만족도 조사를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이 종료된 후에 전자시스템이나 보호자의 휴대전화 등을 이용하여 실시하고자 함(안 제13조의2 신설)
- 다. 공동육아나눔터의 시설·위탁기준을 마련하고자 함(별표4의2 신설)
- 라. 아이돌보미 자격정지 기간이 3년 이내로 확대됨에 따라 이에 맞춰 위반행위별 자격정지 기간을 확대하고자 함(별표5 개정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생 략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- 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별첨)

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항 중 “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아이돌보미의 구체적 주의의무는”을 “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아이돌보미의 주의의무는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 중 “무단이탈 등 업무시간의 개인적 이용 금지”를 “무단이탈 등으로 아이를 방치하는 행위 금지”로 한다.

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3조(아이돌보미의 교육내용 및 교육과정 등)

① 법 제7조제2항제5호에 따른 교육내용은 아이돌보미의 역할과 직업 윤리, 아이의 건강관리, 응급처치, 아이의 발달단계별 이해 및 지도 방법, 양성평등·성인지(性認知) 교육, 아이돌봄서비스 실습 등으로 한다.

②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“법인이나 단체 등 전문기관”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.

1. 가족복지 또는 아동복지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
2. 적성·인성 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

③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아이돌보미의 교육과정은 80시간 이상의 교과학습과 10시간 이상의 실습으로 한다.

④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적성·인성 검사는 아이돌보미를 채용할 때에 실시하며, 검사결과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(이하 “서비스기관”이라 한다)에서 채용여부를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.

⑤ 제1항 및 제3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아이돌보미의 교육내용 및 교육과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 제6조제2항 중 “교육기관이나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(이하 “서비스기관”이라 한다)에 위탁”을 “교육기관이나 서비스기관에 위탁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기르고”를 “향상시키고”로 한다.

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① 법 제1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아이돌봄서비스의 종류·범위 및 이용절차와 서비스기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.

1. 서비스기관 현황 : 기관명, 소재지(「도로명주소법」 제2조제5호에 따른 도로명 및 같은 조 제7호의 건물번호까지로 한다), 연락처
2. 최근 3년 이내의 서비스기관 지정 취소 현황

③ 법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서비스기관의 장이 보호자에게 제공하는 정보는 해당 아이돌보미의 성명, 연락처, 아이돌보미 활동경력, 자격정지·취소 이력 및 만족도조사 결과를 말한다.

④ 제3항에 따른 아이돌보미의 정보 제공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전자시스템 등을 통하여 할 수 있다.

제10조의2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법 제13조의2제6호에서 "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"이란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3에 따른 상이등급 중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
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3조의2(아이돌보미 만족도 조사 방법 등) ①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보호자의 아이돌보미에 대한 만족도 조사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이 종료된 후에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전자시스템이나 보호자의 휴대전화 등을 이용하여 실시한다.

② 법 제18조의2제2항에서 "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 전문기관"이란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.

1. 가족복지 또는 아동복지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
2. 조사·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

제1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3조의3 (공동육아나눔터 시설·위탁 기준)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의 시설 및 위탁 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.

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5조의2 (아이돌보미 실태조사의 방법 등)

① 법28조의2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실시하는 아이돌보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실태에 관한 사항
2. 아이돌보미의 특성 및 활동 실태에 관한 사항
3. 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및 종사자 실태에 관한 사항
4. 일반 국민의 아이돌봄서비스 인지 및 이용 욕구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돌봄아동의 건강,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 여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아이돌봄에 관한 전문인력 및 장비를 갖춘 대학, 연구기관,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. 별표4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별표 5 제1호나목 중 “가목의 해당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정도”를 “위반행위의 정도”로 하고, “1년”을 “3년”으로 하며, 제2호가목의 자격 정지 기간란 “6개월”을 “3년”으로 하고, 같은 표 “나목”을 “다목”으로 하며, 같은 표 나목의 자격 정지 기간란 “6개월”을 “2년”으로 하고, 같은 표 “다목”을 “라목”으로 하며, 같은 표 다목의 자격 정지 기간란 “6개월”을 “1년”으로 하고, 같은 표 “라목”을 “바목”으로 하며, 같은 표 라목의 자격 정지 기간란 “6개월”을 “2년”으로 하고, 같은 표 “마목” 및 “바목”을 각각 “사목” 및 “아목”으로 하며, 같은 표 마목 및 바목의 자격 정지 기간란 “3개월”을 각각 “6개월”로 하고, 같은 표에 “나목”과 “마목”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나. 아이를 모욕하거나 협박하는 행위	법 제32조 제1호나목	2년
마.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장소에서 「청소년 보호법」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청소년유해 약물을 이용한 경우	법 제32조 제1호마목	1년

부 칙

이 규칙은 2020년 11월20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4의2]

공동육아나눔터 시설 및 위탁 기준 (제13조의3 관련)

1. 공동육아나눔터의 시설 기준

가. 입지 조건

공동육아나눔터는 돌봄수요·보건·위생·급수·안전·교통·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을 갖춘 부지를 선정하여야 한다. 또한, 지역 건강가정·다문화가족센터,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, 주거 공간 및 주민 편의시설 등 이용자 접근이 용이한 곳에 설치할 수 있다.

나. 규모

돌봄 공간 등 해당 시설을 모두 합한 면적이 전용면적 66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. 다만, 해당 시행규칙 시행일 이전 설치 시설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.

다. 구조 및 설비기준

1) 일반기준

공동육아나눔터의 구조와 설비는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및 보호자 등의 특성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.

2) 설비기준

가) 돌봄 공간

① 돌봄 공간은 아동 및 보호자 등이 돌봄 활동을 하는 실내공간으로 인원을 고려하여 별도로 구획된 공간을 의미한다.

② 적당한 난방 및 통풍 시설을 하고, 상당 기간의 일조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- ③ 출입구는 비상재해 시 대피하기 쉽도록 복도 또는 넓은 공간에 직접 면하게 하여야 한다.

나) 비상재해대비시설

「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화용 기구를 비치하고, 비상재해에 대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.

다) 그 밖에 실내설비는 다음의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.

- ① 아동이 접근할 수 없는 안전한 장소에 응급조치를 위한 비상약품 및 간이 의료기구 등을 갖추 두어야 한다.
- ② 비상구를 제외한 모든 출입문 및 창문은 안쪽에서 잠길 우려가 없어야 하고, 밖에서 쉽게 열 수 있어야 하며, 출입문 및 창문의 가장자리에는 아동의 손이 끼지 아니하도록 손끼임 방지 고무패킹이나 완충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.
- ③ 돌출형 방열기(라디에이터)는 아동의 신체가 직접 닿지 아니하도록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하며, 이와 유사한 온열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아동이 직접 온열기에 닿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보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.
- ④ 책상, 의자 등 가구의 모서리는 둥글고 표면이 매끄럽게 처리된 것이나, 고무 등으로 모서리에 보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.
- ⑤ 돌봄공간에 설치된 교구장, 수납장 등은 안전을 위하여 아래 부분에 무거운 비품을 보관하여야 하고, 선반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물건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지지대를 설치하여야 하며, 무거운 물건은 너무 많이 쌓아 놓아서는 아니 된다.

- ⑥ 보일러 설비, 퓨즈박스(두꺼비집), 화기, 소독수, 살충제, 조리실의 칼 · 가위 · 포크 · 랩 등은 아동의 손이 닿지 아니하는 위치에 배치되어야 한다.
- ⑦ 공동육아나눔터 내부(벽, 천장 등)의 마감재료는 「건축법 시행령」 제2조에 따른 불연재료, 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, 돌봄공간은 「환경보건법 시행령」 제16조에 따른 환경안전 관리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. 실내장식물과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 및 카펫 등 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에 따른 방염대상물품은 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에 따른 방염성능이 있는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.

2. 공동육아나눔터의 위탁 기준

- 가.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육아나눔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수탁 선정위원회 운영·심사 등 일반경쟁입찰에 부쳐야 한다.
- 나.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육아나눔터의 운영을 위탁·관리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.
- 다.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탁 선정 결과를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아이돌보미의 직무 등) ① (생략) ②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아이돌보미의 구체적 주의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~ 3. (생략) 4. 돌봄장소 무단이탈 등 업무시간의 개인적 이용 금지	제2조(아이돌보미의 직무 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아이돌보미의 주의의무는 ----- -----. 1. ~ 3. (현행과 같음) 4. ----- 무단이탈 등으로 아이를 방치하는 행위 금지
제3조(아이돌보미의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등)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아이돌보미의 교육과정은 80시간 이상의 교과학습과 10시간 이상의 실습으로 한다. ②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아이돌보미 교육내용은 아이돌보미의 역할과 직업윤리, 아이의 안전 및 건강 관리, 응급처치, 아이의 발달단계별 이해 및 지도 방법, 양성평등·성인지(性認知) 교육, 아이돌봄서비스 실습 등으로 한다.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아이돌보미의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등에 필요한 세부	제3조(아이돌보미의 교육내용 및 교육과정 등) ① 법 제7조제2항제5호에 따른 교육내용은 아이돌보미의 역할과 직업윤리, 아이의 건강관리, 응급처치, 아이의 발달단계별 이해 및 지도 방법, 양성평등·성인지(性認知) 교육, 아이돌봄서비스 실습 등으로 한다. ②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“법인이나 단체 등 전문기관”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. 1. 가족복지 또는 아동복지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

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제6조(보수교육) ① (생략)

② 여성가족부장관은 보수교육을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이나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(이하 "서비스기관"이라 한다)에 위탁할 수 있다.

2. 적성·인성 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

③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아이돌보미의 교육과정은 80시간 이상의 교과학습과 10시간 이상의 실습으로 한다.

④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적성·인성 검사는 아이돌보미를 채용할 때에 실시하며, 검사결과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(이하 "서비스기관"이라 한다)에서 채용여부를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.

⑤ 제1항 및 제3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아이돌보미의 교육내용 및 교육과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제6조(보수교육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 교육기관이나 서비스기관에 위탁-----

-----.

이 경우 서비스기관에는 보수교육의 일부만을 위탁할 수 있다.

③ 보수교육의 내용은 아이돌보미의 자질을 기르고, 아이돌봄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사항으로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제9조(보호자에 대한 서비스 안내 등)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아이돌봄서비스의 종류·범위 및 이용절차, 서비스기관 연락처 등을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.

② (생략)

<신설>

-----.

③ -----
----- 향상시키고-----

-----.

제9조(보호자에 대한 서비스 안내 등) ① 법 제1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아이돌봄서비스의 종류·범위 및 이용절차와 서비스기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.

1. 서비스기관 현황 : 기관명, 소재지(「도로명주소법」 제2조제5호에 따른 도로명 및 같은 조제7호의 건물번호까지로 한다), 연락처

2. 최근 3년 이내의 서비스기관 지정 취소 현황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법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서비스기관의 장이 보호자에게 제공하는 정보는 해당 아

<u><신 설></u>	<u>이돌보미의 성명, 연락처, 아이돌보미 활동경력, 자격정지·취소 이력 및 만족도조사 결과를 말한다.</u> <u>④ 제3항에 따른 아이돌보미의 정보 제공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전자시스템 등을 통하여 할 수 있다.</u>
제10조의2(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) ① (생 략) <u><신 설></u>	제10조의2(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) ① (현행과 같음) <u>② 법 제13조의2제6호에서 "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"이란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3에 따른 상이등급 중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</u>
<u>② (생 략)</u> <u><신 설></u>	<u>③ (현행 제2항과 같음)</u> <u>제13조의2(아이돌보미 만족도 조사 방법 등) ①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보호자의 아이돌보미에 대한 만족도 조사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이 종료된 후에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전자시스템이나 보호자의 휴대전화 등</u>

<신 설>

<신 설>

을 이용하여 실시한다.

② 법 제18조의2제2항에서 "여
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법인
나 단체 등 전문기관"이란 다음
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
말한다.

1. 가족복지 또는 아동복지 사
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
나 단체

2. 조사·평가 업무를 수행하는
법인이나 단체

제13조의3 (공동육아나눔터 시설
· 위탁 기준) 법 제19조제3항에
따른 공동육아나눔터의 시설 및
위탁 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.

제15조의2 (아이돌보미 실태조사
의 방법 등) ① 법28조의2에 따
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실시하는
아이돌보미 실태조사에는 다음
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
다.

1.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실태에
관한 사항

2. 아이돌보미의 특성 및 활동
실태에 관한 사항

3. 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및

종사자 실태에 관한 사항

4. 일반 국민의 아이돌봄서비스

인지 및 이용 욕구에 관한 사항

5. 그 밖에 돌봄아동의 건강, 안

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 여성

가족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

정하는 사항

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실태조사

를 아이돌봄에 관한 전문인력

및 장비를 갖춘 대학, 연구기관,

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

시할 수 있다.

[별표 5]

아이돌보미 자격정지 기간(제16조 관련)

1. 일반기준

가. (생 략)

나. 가목의 해당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정도,
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
고려하여 그 처분기간의 2분의 1
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리거나 줄일
수 있으나, 늘리는 경우에도 총 기간이
1년을 초과할 수 없다.

2. 개별기준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자격정지 기간
가. 아이의 신체에 폭행을 가 하거나 상해를 입힌 경우	법 제22조 제1호가목	<u>6개월</u>

[별표 5]

아이돌보미 자격정지 기간(제16조 관련)

1. 일반기준

가. (현행과 같음)

나.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
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처분
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
늘리거나 줄일 수 있으나, 늘리는
경우에도 총 기간이 3년을 초과할 수
없다.

2. 개별기준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자격정지 기간
가. 아이의 신체에 폭행을 가 하거나 상해를 입힌 경우	법 제22조 제1호가목	<u>3년</u>

<u><신 설></u>					
나. 아이를 유기하거나 의식을 포함한 기본적 보호를 소홀히 한 경우	법 제32조 제1호나목	6개월	나. 아이를 모욕하거나 협박하는 행위	법 제32조 제1호나목	2년
다. 아이의 주거지에서 절도 등 불법행위를 한 경우	법 제32조 제1호다목	6개월	다. 아이를 유기하거나 의식을 포함한 기본적 보호를 소홀히 한 경우	법 제32조 제1호다목	2년
<u><신 설></u>			라. 아이의 주거지에서 절도 등 불법행위를 한 경우	법 제32조 제1호라목	1년
			마.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장소에서 「청소년 보호법」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청소년유해약물을 이용한 경우	법 제32조 제1호마목	1년
라. 아이돌보미가 업무 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아이 또는 보호자에게 신체상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	법 제32조 제2호	6개월	바. 아이돌보미가 업무 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아이 또는 보호자에게 신체상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	법 제32조 제2호	2년
마. 법 제10조에 따른 보수 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않은 경우	법 제32조 제3호	3개월	사. 법 제10조에 따른 보수 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않은 경우	법 제32조 제3호	6개월
바. 영리를 목적으로 보호자에게 불필요한 서비스를 알선·유인하거나 이를 조장한 경우	법 제32조 제4호	3개월	아. 영리를 목적으로 보호자에게 불필요한 서비스를 알선·유인하거나 이를 조장한 경우	법 제32조 제4호	6개월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	
연 락 처	(02) 2100 - 6365